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88호)

제 안 설 명



2022. 12. 20.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춘 곤

(국민의힘 강서구 제4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춘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6년과 2017년에 경주와 포항에서 5.8,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올해 10월에도 충북 괴산에서 4.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외지진대피소는 특성상 대부분 학교운동장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중에서 학교운동장이 약 66%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시 개방되어 있는 공원과 달리 학교운동장은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보안과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발생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시설물 등 관리자

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지진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재난분야 자치법규 개정에 대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에게 부여되어 있는 ‘대피소 운영 협력 의무’를 ‘대피소 안내 및 교육’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